

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2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. 2. .

발의자 : 장문혁 의원 외 2인

1. 제안이유

-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림으로써 이들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병역명문가” 및 “3대가족”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 - “병역명문가”란 3대가족 이상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족을 말함
 - “3대가족”이란 조부 및 부·백부·숙부 그리고 본인,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함
- 홍보 및 예우(안 제5조)
 -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함

○ 우대(안 제6조)

-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입장 및 사용할 때에는 입장료와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

3. 참고사항

- 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- 관련법규 : 붙임참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 1)
- 입법예고 : 2012. 1. 27 ~ 2. 15(20일간)
 - 제출된 의견 없음
- 집행기관 의견수렴 : 제출된 의견없음

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병역명문가”라 함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.
2. “3대 가족”이란 조부 및 부·백부·숙부 그리고 본인, 형제 및 사촌 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(사망한 사람 포함)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제2조제2호의 3대 가족 중 어느 한명 이상이 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신청일 현재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문에 적용한다.

제4조(책무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 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홍보 및 예우) ①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우대)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에서 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입장 및 사용할 때에는 입장료와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.

제7조(확인) ①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병역명문가증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가문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병역명문가증과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붙임 1】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에서 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입장 및 사용할 때에는 입장료와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음
(안 제1조 및 제6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병역명문가 우대 내용 중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없으며,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입장 및 사용할 때에 입장료와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것으로 비용발생 추계가 불가능 함

작성자	평창군의회 장문혁 의원 외 2인
연락처	(033) 330- 2189

관 련 법 규

□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(병무청 훈령 제928호)

○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○ 제2조(정의)

1. “병역명문가”라 함은 3대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.
2. “현역복무”라 함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, 준사관, 부사관,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(전투·의무·해양경찰, 경비교도대원, 의무소방원,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)으로 복무를 마친 것을 말한다.

○ 제3조(사업계획의 수립) ① 병무청장은 선정기준 등을 명시한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,

② 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, 단체 등과 연계하여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.

○ 제20조(병역명문가 우대)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발전 시민참여 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할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.